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96,126,908	17,883,807
일반회계	553,465,680	16,603,970
특별회계	42,661,228	1,279,837
공기업특별회계	6,284,353	188,531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6,284,353	188,531
기타특별회계	36,376,875	1,091,306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463,024	43,89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84,001	23,52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66,399	43,99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56,399	22,692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5,675,889	470,277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7,401,681	222,050
수질개선 특별회계	8,829,482	264,884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696,04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예산계상 및 이월조치) 할 수 있다.